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

-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 서울시 장애인취업 박람회(2020.4.17.)가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6.3~6.4)



- ▶ | 슬로건: 꿈을 위한 도전
- ▶1 목 적: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실업해소 및 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
- ▶ I 장 소: 일산 KINTEX 제2전시장 6를 (www.kintex.com)
- ▶ I 참가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 취업담당 교사, 학부모 일반 신입, 경력 구직자(관련기업 참가 시)등
- ▶1 규 모: 약 100개사 170부스(5.673㎡), 3만명 관람 예상
- ▶ I 참가기관(학교): 총 100개사 170개 부스 (후 현장채용 65개사)
 - 대기업관: 약 15부소 금융기업: 약 15부소
 - 공공기관: 약 20무스
 중견(소)기업: 약 45무스
 - 대 학: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사이버 대학 등: 약 25부스
 - 산학관: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중등직업교육 선도학교 등: 30부스
 - 기타 부대행사 등: 약 20부스
- ▶ I구 성: (전시) 채용·상당관, 취업정보 특별관 등 (부대행사) 채용특강·설명회, 진로특강, 진로컨설팅 등

일시	3월25~26일 => 2020년6월3일(수)~04일(목) 변경되었습니다.			
장소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			
참가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 일반신입, 경력구직자(관련기업참가시)등			
행사구성	채용·상담관, 취업정보 특별관 등 △부대행사			
주최	교육부·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제신문			
주관	교육부·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제신문			
기업신청기간	,	, 개 인신청기간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2-360-4509 FAX			
담당자	E-MAIL @			
사이트(출처)	http://www.gojobcon.kr/main/main.php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지급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 적용
-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계획 이행여부 점검 후 지급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24.(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 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 동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 상으로 운영(30만원, 최대 3개월)되다가, '20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되었다.
 - *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 지급(근거법률 환노위 계류 중)
- □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 ① [적용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 '19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외

② (지급금액)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

-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다.
 -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③ (지급 절차) 3단계 진입 후,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한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 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 따라, 참여자 희망 시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점검은 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
-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 참여자의 선호 직종 일자리 발굴 후 추천, 이력서 작성 지원 등 진행
 - * 코로나 19로 인해 2단계 직업훈련 진행이 어려운 경우 참여자 희망 시 3단계 우선 진행 가능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

항목① 상호의무협약 체결
(방문, 팩스, 온라인
http://www.work.go.kr/pkg/index.do)내용- 구직활동이행 협약체결
- 구직활동계획 수립
(방문 및 유선상담 진행)방문
(신청)
일자3단계 초기상담일
(예) 1.1. 상담

② 구직활동이행결과 및
수당신청서 제출
(방문, 팩스, 온라인
http://www.work.go.kr/pkg/index.do)

- 매월 구직활동내역(2회 이상) 제출
* 필요시 증빙 서류 첨부

구직활동 단위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예) 1회차: 1.1.~1.31. / 2.7.까지 신청

2회차: 2.1.~2.28. / 3.7.까지 신청

3회차: 3.1.~3.31. / 4.7.까지 신청

- ③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수당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 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 키지 누리집(www.work.go.kr/pkg/index.do)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이지수 사무관(☎044-202-7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시회적 거리두기 시업장 지침 미련 배포

- 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연기 또는 취소
- 유증상자는 연차휴가 · 병가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기, 근무 중 증상 발현 시 즉시 퇴근 조치 등
- □ 3.23.(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3.21.)에 맞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다.
 -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 호소
 - 이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 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노사 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지침을 안내·확산하고
 -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밴드, 라디오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지침을 집중 홍보하고
 -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300인)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착관리하여 지침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주요 내용]

- (근무형태)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타 유연근무(시 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 접촉자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자가격리하되, 가급적 재택근무 활용(임금 보전)
 -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 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업무활동)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 또는 취소
 -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를 활용(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를 활용)
 - <mark>(유증상자 격리)</mark> 유증상자(37.5℃ 이상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재 택근무·연차휴가·병가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 ①근로자 동의시 연차휴가, ②사규에 따른 병가 등
 - 발열체크(1일 2회 이상)를 통해 근무 중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
 - <mark>(위생·청결)</mark>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개인용 컵 사용 등 개 인 위생 관리 철저
 - 마스크 미착용자의 경우 통근차량 이용 금지, 구내식당 이용시 교차 식사 및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적극 실천
 - (근무환경) 노동자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확보로 밀집도 최소화
 - 개인별 고정자리 배치, 좁은 공간에서 다수 노동자가 밀집하여 일 하는 경우 노동자 간 칸막이 설치
- □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②**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③** 기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을 통해 지침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 ①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내 최대 2천만원 지원, ②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1주 5·10만원,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 ③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 부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 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및 재택·유연근무 지원 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안내 및 전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조기 정착

1 근무형태 다양화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점심시간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 운영**
- 휴가 및 유연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2 업무 활동 관리

-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워 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 **연기 또는 취소**
 -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유럽, 이란, 일본 등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 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 용하고 회의를 실시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있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③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o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 기록(1일 2회 이상)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 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4 위생·청결 관리

- o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사무실, 사무기기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 통근차량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5 근무 환경 관리

-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참고1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개요

- □ (개요)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 (지원요건) ①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②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 ❸ 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u>하</u>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직접지원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참고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유형>

시차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출퇴근제	기근의 포장근로자인을 분구하면서 물되는지인을 포장하는 제포
선택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근무제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제	근무하는 제도
원격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근무제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근로계약서 작성 (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 선택 해당) ③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운영)
 -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 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 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① 가족들봄 휴가

- (내용)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 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휴 가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기간) 연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해야 함

②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② <u>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u>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⑤ <u>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u>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 가**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 (지원수준)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 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 o (신청방법) 3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무혁신 우수기업 되면 각종 혜택이 넘쳐난다!

-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
- 코로나19에 대용하여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가점 부여
- ◆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 <3.26.(목)~4.22.(수)>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3월 26일** 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다.
 -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했다.
 - 참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컨설팅과 구분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져 기업에서 관심이 많다.
- □ 이러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①참여기업 모집·선정, ^②근무혁신 이행(3개월), ^③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 ^④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다.
 -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 근무혁신 계획을 평가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근무 혁신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현장지원단 컨설팅도 제공한다.



- 참여기업은 약 3개월(5~7월)간 근무혁신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발된다.
-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진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혜택 내용

분야	혜택 내용(3년간)
근로감독 면제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2천만원 한도(등급별 50~80% 차등)< '20년 추가>
병역특례업체 선정(병무청)	1점 가점
가족친화인증제도(여가부)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가점<'20년 추가>
대출금리 우대	신한(최대 0.5%p), IBK기업(1%p)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SS등급 우수기업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근로자휴가지원사업(문체부)<'20년 추가>,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산자부) 등 3개 부처의 7개 사업
기업홍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공시(금융위) 등

- □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는 유연근무와 휴가제 활성 화 등에 초점을 두고 보완했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자녀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제) 등 유연근무 도 입, 안식휴가제와 같은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 정량·정 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시행한 기업에는 별도 가점도 부여한다.
- 또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관공서 공 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도 정성평가 우 대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
 - * (도입시기) '20년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 '21년 30~299인 → '22년 5~29인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평가지표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9년	2020년
정량 지표	유연근무	200점	230점, 재택근무제·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제) 가중치(1.5)
	연차휴가	100점	130점
 정성	연차휴가	50점	50점, 안식휴가 등 휴가제 신설·운영 우대
	일하는 방식	50점	90점, 스마트팩토리·협업툴 구축 우대
지표	일하는 문화	50점	50점, 직장내 괴롭힘 예방·해결 제도 마련 우대
가점	법정 일·가정양립제도 이상의 제도 도입 활용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제도당 10점, 최대 40점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추가, 최대 40점
	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활용	_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각 7점, 최대 20점 부여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여, 77개의 기업이 근무혁신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45개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됐다.
 - o 우수기업 유형으로는 SS등급이 11개소, S등급이 17개소, A등급이 17개소 선정되었다.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www.nosa.or.kr)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 * (접수처)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 층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사무관(☎044-202-7497), 노사발전재단 윤태웅 선임전문위원(02-6021-12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인포그래픽



2020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제1차 참여기업 모집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한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이행과 평가*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평가항목: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 문화



신청기간

3월 26일(목)~4월 22일(수)

참여기업 참여기업 선정 🆠 근무혁신 실시 (4월말) (5~7월) * 이후 일정 근무혁신 만족도조사 및 우수기업 선정 근무혁신 평가 우수기업 선정

(SS,S,A등급,

유효기간 3년)

기념식 (11월)

(8월)

시청방법

-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노사발전재단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그간 추진현황, 이행계획, 선정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 재단소식 → 사업공고에서 확인

접수처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우수기업 주요 혜택

구분	인센티브명 지원내용
감독, 조사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3년면제
재정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지원	최대 2천만원 지원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가족친화인증 가점 부여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정부	고용노동행정유공표창
포상	선정 시 우대 (SS등급)
그은사	대출금리 우대

(신한은행) 최대 0.5% 우대

(IBK기업은행) 1% 추가감면

금융삼

우대

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206, 1207, 1029)

붙임2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개요

- □ (목적)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 (`19년 실적) 122개 기업 참여 신청, 77개 기업 참여, 45개 우수기업(SS등급:11개, S등급:17개, A등급:17개) 선정
- 【사업내용】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② 근무 혁신을 실시하면(약 3개월), ③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④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 인센티브 부여
- □ (평가항목·등급)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3개 등급(SS, S, A)으로 구분, 유효기간 3년
 * SS(700점 이상), S(600점 이상 700점 미만), A(500점 이상 600점 미만)
- □ (인센티브)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현장지원단 상담(컨설팅) 등

□ '20년도 추진계획(안): 근무혁신 우수기업 100개 선정

구 분	추진일정(안)	비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1차: 3.26.~4.22. 2차: 5월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참여기업 선정	1차: 4월 말 2차: 6월 말	•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1차: 5~7월 2차: 7~9월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기업별 3개월
현장지원단 운영	5월~10월	• 기초컨설팅, 근무혁신 이행확인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1차: 8월 2차: 10월	• 근무혁신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11월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인센티브 목록>

구분	인센티브명	지원내용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등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 '20년 신설 >	투자비 지원(2천만원 한도, 등급별 50%, 60%, 80%)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병역특례업체	병역특례업체 추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병무청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 < ′20년 신설 >	가점 부여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등 2점)	여성가족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 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20년 신설 >	선정 시 우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산업통상자원부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 사업 선정 우대	정책부합도 3점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포상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선정 시 우대 (SS 등급)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고용노동부
기업 홍보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근무혁신 우수기업 상징(마크)	등급별 상징(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컨설팅 참여	일터 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붙임3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

① 근무혁신 평가지표- 정량지표 총 76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출방법	점수
1. 초과근로 (350점)	① 초과근로자 비중(A%)과 초과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B) 현황 * 초과근로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자 * B > 12시간인 기업은 우수기업 선정 시 제외	① 초과근로 현황 점수= 250 - 5A/4 - 125B/12 * 평가일 직전 3개월 평균	250점
[] 현황 [2] 감축	② 초과근로자 비중(C%)의 감소와 초과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D)의 단축	 ② 초과근로 감축 점수= 50 x {(△C/C+(△D/D))} * 신청일과 개선 종료일 시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감축변화 산출 	100점
2. 유연근무	 □ 도입·실시 여부 □ 유연근무제 인정 유형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 원격근무제 ○ 전환형 시간제 	① 유연근무 도입 점수= 총 5개의 유연근무 중 3개 이상 도입·실시 (50점) 2개 도입·실시 (40점) 1개 도입·실시 (30점) * 평가일 직전 3개월 기준	50점
(230점) ① 도입실시여부 ② 활용정도	② 활용 정도 * 유연근무제 활용률 = 평가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유연근무제 이용근로자수/총 근로자수)×100 * 재택근무제, 전환형 시간제의 경우, 활용인원의 1.5 가중치 적용	② 활용정도 점수= □ 20.0% 이상 (180점) 17.5% 이상~20.0% 미만 (160점) 15.0% 이상~17.5% 미만 (140점) 12.5% 이상~15.0% 미만 (120점) 10.0% 이상~12.5% 미만 (100점) 7.5% 이상~10.0% 미만 (80점) 5.0% 이상~7.5% 미만 (60점) □ 5.0% 미만 (활용률(%)×10점)	180점
3. 연차휴가 (130점)	③ 연차휴가 활용 * 연차휴가 활용률=0.8x①+0.2x② ①직전연도 연말 기준 (연차휴가 사용일수/전체 근로자연차휴가 부여일수)×100 ②평가연도 평가일 직전월(C) 기준(연차휴가 사용일수/전체 근로자연차휴가 부여일수*C/12)×100	□ 연차휴가 활용 점수= 100% (130점) 90% 이상~100% 미만 (115점) 80% 이상~90% 미만 (100점) 70% 이상~80% 미만 (85점) 60% 이상~70% 미만 (70점) 50% 이상~60% 미만 (55점) 40% 이상~50% 미만 (40점) 40% 미만 (25점)	130점
6. 만족도 조사 (50점)	① 근로자의 근무혁신 만족도	□ 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응답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50점



② 근무혁신 평가지표- 정성지표 총 24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점수
1. 초과근로 (50점)	① 정시퇴근 관리체계 ②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 ③ 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 [1]2]3]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출	50점
2. (연차)휴가 (50점)	① 앤휴가등휴가사용활성화 ② 앤휴가등휴가마사용관리 ③ 안수휴가등휴가제 신설운영	○ [1]2]3]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출	50점
3. 일하는 방식 (90점)	1 스마트팩토리, 협업 툴 구축 2 회의·보고 방식 변화 3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4 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관리 5 기타 알하는 방식 개선 노력	○ <u>112131415</u>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출	90점
4. 일하는 문화 (50점)	① 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② 작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노력 ③ 회식문화 변화 ④ 기타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	○ <u>1121314</u>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 제도도입, 활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증빙자료 제출	50점

③ 가점- 최대 8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점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법정 일·가정 양립 제도* 이상의 제도 도입·활용	○ 제도 당 10점, 최대 40점	40점
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활용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실시	○ 제도 당 7점, 최대 20점	20점
추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서 제출	20점

* (일·가정 양립 제도 가점 내용)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유사산휴가, 의무이행사업장 외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 자동육아휴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등

